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종전의 「시설물 정보관리종합시스템 및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6호)에 제3종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성능 평가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출도서”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시설물관리대장, 설계도서 등을 말하며, 설계도서

등의 상세목록 및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2. “제출의무자”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도서를 제출하는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제3종 시설물의 관리주체를 말한다.
3. “안전점검종합보고서”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이하 “안전관리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말한다.
4. “시설물관리대장”이란 시설물의 기본현황, 상세제원, 내진정보, 안전 점검·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작성한 양식을 말한다.
5.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란 법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 성능평가 계획, 보수·보강 계획 등의 정보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1년 주기의 시설물관리계획과 5년 주기의 중기관리 계획으로 구분한다.
6.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등”이라 한다) 결과”란 법 제13조 및 제17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7. “성능평가 결과”란 법 제40조 및 영 제28조에 따른 시설물의 성능평가 결과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8. “유지관리 결과”란 법 제41조 및 영 제29조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개량·보수·보강 결과,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등 안전조치 결과 및 시설물 제원의 변경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9. “지정기관”이란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10. “취합기관”이란 관리주체가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이하 “FMS”라 한다)에 입력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안전점검등 결과, 유지관리 결과, 성능평가 결과 등을 확인하여 승인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 나. 특별자치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 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주체가 입력한 시설물관리계획을 확인하여 승인하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

11. “제출기관”이란 FMS를 통하여 취합기관이 승인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안전점검등 결과, 성능평가 결과, 유지관리 결과를 보고받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 나. 시·도지사
 12. “관리기관”이란 법 제28조제2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각각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의 등록 등 관리감독 업무를 위임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13. “미제출자”란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안전점검등 결과, 유지관리 결과, 성능평가 결과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4. “미실시자”란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5. “운영기관”이란 영 제43조에 따라 FMS의 구축·운영·관리를 위탁받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16. “대행기관”이란 법 제26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대행하는 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의 정보관리에 적용하며,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1종, 제2종 및 제3종

외 시설물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시설물정보의 통합관리 및 이 규정에 따른 정보 공유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의 관리·운영 등

제1절 시설물정보의 종류 및 제출

제5조(시설물정보의 종류) FMS로 관리하는 시설물 정보의 종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2. 법 제6조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3. 법 제8조에 따른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에 따른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5.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내용
6.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7. 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8. 법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 등 긴급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9. 법 제24조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에 관한 사항
10. 법 제28조, 제31조제1항, 제35조 및 제67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

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 등록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11. 법 제31조제2항, 제35조 및 제67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자의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12. 법 제36조 및 제40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
 13. 법 제41조에 따른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14.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에 관한 사항
 15. 영 제9조 및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기술자의 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되고 시설물의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제6조(시설물정보의 입력·보고·제출) 제5조에 따른 시설물정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은 관리주체 등이 제7조에 따라 입력·보고하고, 취합기관 및 제출기관이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승인·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28조·제31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의 등록·변경·행정처분·과태료 부과 현황은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자 및 관리기관이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력·신고·제출하여야 한다.
3. 법 제17조, 제36조 및 제40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

는 관리주체 등이 입력·보고·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한 경우 대행기관이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를 입력하도록 하고 관리주체 등이 이를 확인하여 제출할 수 있다.

4.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제한 등 긴급안전조치,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결과와 법 제58조에 따른 사고발생 사실은 관리주체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입력·보고·제출하여야 한다.
5. 규칙 제10조에 따른 기술자의 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은 제26조에 따라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기관이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을 이수한 자가 교육 이수 정보의 입력을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등 교육기관이 입력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자가 입력하여야 한다.
6. 법 제9조에 따른 제출도서는 제출의무자가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7.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안전점검종합보고서는 발주자가 제38조에 따라 입력·제출하여야 한다.
8.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사실은 준공·사용 승인자가 제33조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9. 법 제8조 및 영 제5조에 따른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은 지정기관이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력하

여야 한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물정보에 관한 입력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FMS 상의 사용설명에 따른다.

제2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

- 제7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① 운영기관은 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관리주체 등이 확인 및 참조할 수 있도록 FMS에 입력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 ② 관리주체는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3조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FMS에 입력하여 취합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설물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입력하여야 한다.
- ③ 법 제40조에 따른 성능평가 대상시설물의 관리주체는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3조에 따른 중기관리계획을 매 5년 마다 2월 15일까지 FMS에 입력하여 취합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D등급과 E등급인 시설물(이하 "안전취약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제한, 사용금지, 보강 또는 개축, 철거 등 안전조치 계획을 FMS에 반드시 입력하여야 한다.
- ⑤ 관리주체는 긴급한 보수·보강을 실시하거나, 수립된 보수·보강 계획 또는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시시기 변경 등으로 안전 및 유지관리계

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FMS를 통해 제출하고 취합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취합기관의 조치) ① 취합기관은 법 제6조에 따라 관리주체 등이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FMS에서 이를 승인하여 제출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취합기관은 FMS에서 미제출자 현황을 확인하여 제출을 촉구하여야 하며, 미제출자 중 민간관리주체에게는 과태료 부과 대상 통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제출기관의 조치) ① 제출기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취합기관이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보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현황을 확인한 후 이를 FMS를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기관은 취합기관이 조치한 미제출자에 대한 제출 촉구, 과태료 부과 대상 통보 등의 현황을 FMS에서 확인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정·보완) 법 제6조제8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요구한 기한 내에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현황 보고) 운영기관은 FMS에 입력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미제출 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의 정보관리

제12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변경)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규칙 제25조 및 규칙 별지 제13호의 서식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현황을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상호·대표자·사무소 소재지·기술인력·보유장비 및 자본금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현황과 변경사항의 사실 여부를 FMS에서 확인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할 경우 그 결과를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관리기관은 법 제31조 및 영 제25조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에게 행정처분을 내린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과 처분사유를 처분일로부터 2일 이내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4조(유지관리업자의 등록·변경·행정처분) ① 관리기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유지관리업자의 등록·변경·행정처분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 결과를 최초로 제출할 경우에는 그 등록 현황을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 현황 보고) 운영기관은 FMS에 입력된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의 등록 및 행정처분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절 안전점검등·성능평가·유지관리 결과 제출 및 관리

제16조(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의 제출) ① 관리주체 등이 법 제13조제7항, 제17조제4항 및 제40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FMS에 입력하고 취합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설물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점검 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가.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나. 기술용역계약서 및 세금계산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다. 기술심의(자문) 증빙자료(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를 입력하는 관리주체 등은 법 제22조, 영 제18조 및 규칙 제19조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 등이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대행기관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 등을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를 입력하는 대행기관은 법 제27조에 따른 하도급을 한 경우 그 하도급 사실 및 관리주체에 대한 통보사실을 입력하여야 한다.

⑤ 취합기관은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7조에 따라 제출되는 e-보고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FMS에서 승인하여 제출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출기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취합기관이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를 보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FMS에서 확인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자에게 과태료 부과 대상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결과 e-보고서의 제출 및 활용) ① 관리주체 등은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 제출 시 e-보고서[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첨부자료로 제출하는 보고서로서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 보고서를 보관 및 활용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보고서 PDF파일, 부록 PDF파일 등)에 의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e-보고서의 입력기준 및 전자매체 작성방법 등 세부사항은 FMS상의 사용설명에 따른다.

③ 운영기관은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와 e-보고서의 일치 여부

및 인쇄상태 등을 확인하여 e-보고서를 반려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 등은 반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출된 e-보고서의 활용은 제43조에 따른 제출도서의 활용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 ① 운영기관은 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결과를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시정 또는 부실로 평가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해당 용역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보완하여 보완기간 내에 FMS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유지관리 결과의 제출 등) ① 관리주체가 법 제23조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 그 조치내용을 30일 이내에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법 제22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거나 중대한 결함을 통보받아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착수하거나 그 조치를 완료한 경우 30일 이내에 FMS를 통해 그 사실을 취합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소관 시설물이 안전취약시설물로 확인된 경우 법 제25조에 따른 위험표지 설치 및 주민공지 여부를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가 법 제41조 및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유지관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FMS를 통해 취합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취합기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지관리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고 FMS에서 승인하여 제출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시설물 사고 정보)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법 제58조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시설물명
2. 시설물 위치
3. 사고일시
4. 사고내용
5. 피해내용(인적·물적)
6. 조치결과
7. 향후 계획

제21조(미제출자 및 미실시자에 대한 조치) ① 취합기관은 미제출자 현황을 FMS에서 수시로 확인하여 미제출자에게 제출을 촉구하여야 한다.

② 제출기관은 미제출자 현황을 FMS에서 수시로 확인하여 미제출자에게 제출을 촉구하고, 미제출자와 미실시자를 구분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출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FMS를 통해 제출하

지 않은 미제출자와 미실시자를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취합기관 또는 제출기관은 법 제67조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의 관리)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는 법 제36조에 따라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을 FMS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라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결과가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실적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실적확인서 발급 등) ① 운영기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가 규칙 제29조에 따라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실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가 FMS에 입력된 해당기관의 행정처분 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요청하는 경우 별지 3호서식에 따라 해당기관의 행정처분 현황자료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실적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5조(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시결과 현황 보고) ① 운영기관은 FMS에 입력된 시설물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종별, 등급별로 구분하여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FMS에 입력된 중대한 결함 및 안전취약시설물의 현황과 조치현황을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에 따라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FMS에 입력된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현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기술자의 교육 이수) ① 교육기관은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기술자 교육 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이수자가 교육 이수 결과 입력에 필요한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자가 입력하여야 한다.

가. 교육기관

나. 교육과정명

다. 교육이수자 성명

라. 교육이수자 생년월일

마. 교육기간 및 수료일자

바. 수료번호

사. 수료증

제27조(정보시스템 데이터 개방) ① 운영기관은 FMS에 입력된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 안전관리 현황 정보를 국민에게 공

개할 수 있다. 다만,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 및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 시설물명
 2. 시설물종류
 3. 시설물종별
 4. 주소(시,군,구까지만 공개한다)
 5. 최종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일자
 6. 안전등급
 7. 성능등급(성능평가 대상 시설물)
 8. 시설물규모
 9. 취합기관정보
 10. 다음번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도달한 날짜
- ② 운영기관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1.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명
 2. 소재지(시군구)
 3. 등록분야
 4. 등록일
 5. 대표자명
 6. 등록상태(정상, 영업정지, 등록취소, 휴업, 말소)
 7. 연락처

8. 대행실적(등록분야별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대행 건수와 계약금액)

③ 시설물 안전관리현황 정보는 FMS를 활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5절 제3종시설물의 정보관리

제2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① 지정기관은 법 제8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고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시설명, 시설물구분(건축물,시설물), 시설물유형(교량,터널 등)
2. 시설물 규모 및 구조형식
3. 준공연도, 지정일자, 안전등급
4. 소유주체(공공, 민간), 유지관리주체(공공,민간), 도로명 상세주소
5. 지정 사유
6.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7. 기타 필요 사항

② 운영기관은 지정기관이 입력한 시설물명, 소재지, 지정일, 담당 취합기관 정보 등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현황을 게시하여 열람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제29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요청) ① 관리주체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기관에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규칙 별지 제4호서

식에 따라 FMS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여 지정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인 인적사항 및 연락처
2. 시설명, 시설물구분(건축물, 시설물), 시설물유형(교량, 터널 등), 도로명 상세주소
3. 소유자(공공, 민간), 관리주체(공공, 민간)
4. 시설물 규모 및 구조형식
5. 안전점검 결과보고서(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
6. 시설물 관리대장 사본

제30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해제) ① 지정기관은 법 제8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제3종시설물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물(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2. 해제 사유
3.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등

제31조(제3종시설물의 해제 요청) ① 관리주체가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기관에 제3종시설물 지정을 해제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FMS에 입력하여 지정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인 인적사항 및 연락처
2. 시설물명
3. 시설물 소재지
4. 해제 신청사유
5.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건축물대장 등 용도변경 또는 그 밖에 보수보강, 철거 등 관련 입증자료

제32조(제3종시설물의 통계 관리) 지정기관은 해당기관에서 관리하는 제3종시설물의 지정, 해제 및 통보 등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집계되도록 제3종시설물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절 설계도서 등의 제출 및 관리

제33조(준공·사용승인 사실 통보서의 제출) 제1종 및 제2종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7항에 따라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 1개월 이내에 제출의무자에 관한 정보와 준공·사용승인 사실 통보서를 FMS에 등록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① 제1종 및 제2종시설물의 제출의무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별표 1에 따른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 등을,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 3개월 이내에 별

표 1에 따른 감리보고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종 및 제2종시설물의 제출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제출도서가 증축 등으로 준공 또는 사용승인 시와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관리주체 및 운영기관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3종시설물의 제출의무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표 1에 따른 준공도면 또는 실측도면을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중요한 보수·보강을 실시한 경우 보수·보강을 완료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설물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설물관리대장을 수정하여야 한다.

⑤ 제1종 및 제2종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출도서를 확인한 후에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⑥ 운영기관은 제출의무자 및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출도서의 제출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⑦ 제1종 및 제2종시설물 건설공사의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행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38조에서 같다)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의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공단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자료분실 등으로 제출도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관리주체는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실시 시 실측도면을 작성하여 FMS에 제출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⑨ 제4항의 중요한 보수·보강이란 영 제7조 및 규칙 제7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한 보수·보강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2. 건축물의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 (단, 사이기둥·최하층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 제외)
3. 교량의 받침
4. 터널의 복공부위
5. 하천시설의 수문문비
6. 댐의 본체, 시공이음부 및 여수로
7. 조립식 건축물의 연결부위
8. 상수도 관로이음부
9. 항만시설 중 갑문문비 작동시설과 계류시설, 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의 구조체

제35조(제출 면제) 사업주체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국방이나 그 밖의 보안상의 비밀유지가 필요한 제1종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과 관련된 제출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과 운영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시설물관리대장의 제출방법) ① 제1종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시설물관리대장을 FMS를 통해 등록하여야 한다.

② 지정기관은 제3종시설물 지정 시 제28조제1항 각 호의 정보가 담긴 임시 시설물관리대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된 후 1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임시 시설물관리대장을 보완하여 시설물관리대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리주체는 준공 또는 사용승인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설물관리대장을 등록하는 경우 FMS 사용설명 상의 시설물관리대장 서식에 따라 관련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의 제출방법) ① 제1종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를 별표 1의 목록에 따라 FMS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된 후 1개월 이내에 설계도서를 별표 1의 목록에 따라 FMS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의 제출형식은 별표 2에 따른다.

제38조(안전점검종합보고서 제출방법) ① 제1종 및 제2종시설물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제34조제7항에 따른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FMS를 통해 제

출하여야 한다.

② 제1종 및 제2종시설물 외의 건설공사 발주자는 필요 시 운영기관으로 하여금 콤팩트 디스크로 제작한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보존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제출도서의 접수 및 확인) ① 운영기관은 제출의무자가 시설물관리대장을 제36조에 따라 제출한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 시설물인지 여부, 정보의 오입력 및 미입력 사항 등에 관한 확인을 거쳐 시설물관리대장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제출의무자가 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를 제37조에 따라 제출한 경우 이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제출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제40조(안전점검종합보고서 제출 사전예고 및 제출 촉구) ① 운영기관은 FMS에 등록된 시설물의 준공·사용승인을 확인한 후 제출의무자가 제39조에 따라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매달 초에 사전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안전점검종합보고서의 제출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며, 제출의무자가 준공·사용승인 후 3개월 이내에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기한의 다음 달 초에 제출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41조(제출도서의 보존) ① 제출도서의 보존기간은 당해 시설물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② 운영기관은 제출до서를 종류 별로 등록번호, 등록일자, 제출자, 발주자 또는 관리주체 등의 내용이 검색가능 하도록 전산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제출до서의 보존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파일 등이 손상·분실되지 않도록 하고,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보안시설 등을 갖추어 수시로 보존상태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2조(제출до서의 활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기관에 열람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 관리주체가 요청한 경우
2. 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가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성능평가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요청한 경우
3. 법 제5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 관련전문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요청한 경우
4.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5.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내진보강의 권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기관에 사본발급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 관리주체가 요청한 경우
2. 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가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성능평가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해당 관리주체의 허락을 얻어 요청한 경우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소관시설물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요청한 경우
4.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5.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사본을 발급할 때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④ 운영기관은 제출до서를 열람하게 하였거나 사본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열람 및 발급일자, 열람 또는 발급 요청자, 열람 또는 발급내용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3조(제출до서의 관리현황 보고) ① 운영기관은 법령에 따라 제출받은 설계до서의 관리현황을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제출받은 안전점검종합보고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현황을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미제출자 현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행정사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도서의 제출 및 보존·관리 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단체·협회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제출도서의 제출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기관, 관리주체, 및 사업주체에게 주기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7절 입력자료의 신뢰성 확보

제45조(FMS 입력자료의 신뢰성 확보 등) ① 운영기관은 FMS에 입력된 시설물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입력 및 승인기관(관리주체 포함)에 방문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설물관리대장 등 FMS 입력정보의 누락 또는 오류
2. 법령상 관리주체의 의무이행 여부
3. 기타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확인 및 점검을 받는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입력된 정보의 누락 또는 오류의 수정을 요청받은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장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운영 등

제46조(FMS 관리·운영) ① 운영기관은 FMS를 통해 제출되는 시설물의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시스템 관리, 프로그램 개선과 보급, 이용자 교육 등 FMS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FMS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기관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47조(사용권한 관리) 운영기관은 사용자 유형에 따라 시스템 사용권한을 부여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8조(FMS의 변경) ① 운영기관은 해당 법령의 개정으로 업무범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FMS를 변경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FMS에 대한 주요 개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FMS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검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9조(보안) 운영기관은 FMS로 관리되는 전산자료 및 데이터베이스의 위조·변조·훼손·멸실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0조(백업) ① 운영기관은 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파괴·변조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백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백업자료는 도난·훼손·멸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51조(장애복구) ① 운영기관은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요인을 확인하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사용자로부터 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이상을 통보 받았거나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점검을 시행하고, 장애발생 시 신속히 복구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52조(표준연계서비스)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주체 등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 후 구축·운영하고 있는 전산시스템과 FMS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FMS와 연계하는 경우에는 FMS에서 제공하는 연계표준을 따라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스템 간 연계를 위해 표준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표준연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8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8-46호, 2018.1.18>

이 규정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계도서 제출 형식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물별 설계도서 등 제출 목록 (제2조, 제34조제1항 및 제3항, 제37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구 분		상 세 목 록	
1,2종 시설물 설계 도서	시설물구분	설계도면	관련문서
	1.교량	위치도(또는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중·횡), 상부·하부 구조물도, 빔상세도, 신축이음장치·교좌장치 상세도 등	○ 준공보고서 설계보고서 ○ 준공내역서 ○ 공사시방서 (특별시방서 포함) ○ 각종계산서 (구조, 수리, 수문, 강재 용량, 기전설비 등) ○ 토질 및 지반조사 보고서 ○ 그 밖에 사용 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2.터널, 공동구	위치도(또는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중·횡), 강지보·록볼트·샷크리트·라이닝도, 구조물도, 굴착공법 및 보조공법 도면, 보수도면, 기계설비·전기설비도면, 환기시설, 대피소, 갯문, 옹벽, 방수도, 배수도, 관리사무실, 계측 및 기도 등	
	3.지하차도	위치도(또는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중·횡), 구조물도, 빔상세도, 굴착공법 및 보조공법 도면, 방수도, 배수도 등	
	4.복개구조물	위치도(또는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중·횡), 상부 및 하부구조물도, 빔상세도, 신축이음 및 교좌장치 상세도 등	

구 분		상 세 목 록	
1,2종 시설물 설계 도서	시설물구분	설계도면	관련문서
	5. 항만	○공통 : 위치도(또는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종·횡) 등 ○토목 : 계류시설 및 갑문시설 구조도면 (Chamber · Aqueduct · 안벽 · 호안 · 접안 · 하역 · 외곽시설(방파제)) 등 ○건축 : 구조도 (조작실, 관리소) 등 ○기계 : 문비 · 권양기 · Aqueduct 기기 배치도, 조립도, 상세도, 펌프설비 등 ○전기 : 갑문관련 전기 및 계장 설비도 등	○ 준공보고서 설계보고서 ○ 준공내역서 ○ 공사시방서 (특별시방서 포함) ○ 각종계산서 (구조, 수리, 수문, 강재, 용량, 기전설비 등) ○ 토질 및 지반조사 보고서 ○ 그 밖에 시공 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6. 댐	※ 본댐 및 조정지댐 관련 설계도서 ○공통 : 위치도(또는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종·횡) 등 ○토목 : 구조도 (댐체, 여수로, 방수로, 수로터널) 등 ○건축 : 구조도 (발전소) 등 ○기계 : 문비 · 권양기 · 수압철관 · Anchorage 배치도, 조립도, 상세도 등 ○전기 : 문비관련 전기 및 계장 설비도 등	

구 분		상 세 목 록	
1,2종 시설물 설계 도서	시설물구분	설계도면	관련문서
	7. 건축물 8. 지하도상가	○공통 : 위치도(또는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종·횡) 등 ○건축도면 : 배치도, 평면도(주요층, 기준층),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면 : 평면 및 단면도, 배근도, 철골 접합 상세도 등 ○기계설비도면 : 승강기, 냉 · 난방 및 환기 등 ○전기설비도면 : 조명, 통신, 방송, 변전 및 발전 등 ○소방설비도면 : 방화 구획도, 옥내 · 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급배수설비도면 : 계통도, 수조 및 정화조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 준공보고서 설계보고서 ○ 준공내역서 ○ 공사시방서 (특별시방서 포함) ○ 각종계산서 (구조, 수리, 수문, 강재, 용량, 기전설비 등) ○ 토질 및 지반조사 보고서 ○ 그 밖에 시공 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9. 하구둑	○공통 : 위치도(또는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종·횡) 등 ○토목 : 제방, 수문, 교량상세도 (종·횡단면도, 일반도, 구조도) 등 ○기계 : 갑문 · 수문 · 권양기 배치도, 조립도, 상세도 등 ○건축 : 조작실 도면 (구조도면 포함) 등 ○전기 : 문비 관련 전기 및 계장설비도 등	

구 분		상 세 목 록	
1,2종 시설물 설계 도서	시설물구분	설계도면	관련문서
	10. 수문, 배수펌프장	○공통: 위치도(또는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중·횡) 등 ○토목: 구조도 등 - 수문: 문주, 압거, 관양대, 날개벽 - 배수펌프장: 유입수조, 펌프실, 전동기실, 토출수조, 유수지 등 ○기계: 배치도, 조립도, 상세도 등 - 수문: 문비, 문틀, 관양기 - 배수펌프장: 펌프, 전동기, 찬정크레인, 제진기 등 ○건축: 조작실 도면 (구조도면 포함) 등 ○전기: 문비관련 전기 및 계장 설비도 등	○ 준공보고서 설계보고서 ○ 준공내역서 ○ 공사시방서 (특별시방서 포함) ○ 각종계산서 (구조, 수리, 수문, 강제용량, 기전설비 등)
	11. 제방	위치도(또는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중·횡), 제방표준 단면도, 횡단도 및 종단도, 제방 횡단구조물 상세도(수문, 압거, 육갑문 등), 제방 접합부 상세도(교량, 보 접합부 등) 등	○ 토질 및 지반조사 보고서 ○ 그 밖에 사공 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구 분		상 세 목 록	
1,2종 시설물 설계 도서	시설물구분	설계도면	관련문서
	12 상하수도 13. 공공하수 처리시설	○공통: 위치도, 시설물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중·횡) 등 ○토목: 수처리 계통도, 일반도 및 구조도, 상세도 등 - 수도시설: 취수장·정수장·관로시설·가압장·배수지·배출수처리시설 - 하수처리장: 침사지·펌프장·수처리·슬러지처리·방류관거 ○기계: 각종 기계류 계통 및 설치 상세도 등 ○전기: 전기 및 계장 설비의 계통 및 설치 상세도 및 관련 전기방식 설치 보고서 등 ○건축: 각종 건축물의 일반도 및 구조도, 상세도 등	○ 준공보고서 설계보고서 ○ 준공내역서 ○ 공사시방서 (특별시방서 포함) ○ 각종계산서 (구조, 수리, 수문, 강제용량, 기전설비 등)
	14. 용벽 및 절토사면	○공통: 위치도(또는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중·횡) 등 ○옹벽: 일반도, 구조도 등 ○절토사면: 일반도 및 구조도 등 (양귀, 옹벽, 파암터널 등이 있는 경우 등 구조도 포함)	○ 토질 및 지반조사 보고서 ○ 그 밖에 사공 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구 분		상 세 목 록	
1,2종 시설물 설계 도서	시설물구분	설계도면	관련문서
	15. 보	○ 공통 : 위치도(또는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중·횡) 등 ○ 토목 : 구조도 (교정보, 가동보, 어도, 관리교) 등 ○ 건축 : 구조도 (조작실, 관리소, 발전소) 등 ○ 기계 : 수문·관양기·발전설비, 조립도, 상세도 등 ○ 전기 : 기계관련 전기 및 계장 설비도 등	○ 준공보고서 설계보고서 ○ 준공내역서 ○ 공사시방서 (특별시방서 포함) ○ 각종계산서 (구조, 수리, 수문, 강재, 용량, 기전설비 등) ○ 토질 및 지반조사 보고서 ○ 그 밖에 시공 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감리 보고서	시설물전체 (건축물 제외)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최종보고서	
	건축물 (공동주택 제외)	○ 건축법시행규칙 제119조에 따른 감리보고서	
	공동주택	○ 주택법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최종감리보고서	

구 분	상 세 목 록	
	설계도면	관련문서
3종 시설물	평면도 등	보유 시 제출

[별표 2] 제출형식 (제37조제3항 관련)

구 분		내 용	비 고
제작매체	CD의 종류	이미지 데이터 기록이 가능한 CD	
	CD의 규격	직경 12Cm, CD-ROM, 650MB 이상 및 74분 이상	
도면 및 문서 형식	벡터 데이터 형식의 표준	건설분야 도면정보교환표준(KOSDIC) 형식	도면부분 데이터 형식
	이미지 데이터 형식의 표준	ISO 19005-1(PDF/A-1) 형식 (다만, 최저해상도는 300dpi 이상, 스캐닝 축적은 1:1로 하여야 한다.) CCITT(국제전신전화 자문위원회) Group 4에 따른 TIFF 표준 형식 (다만, 최저해상도는 300dpi 이상, 색도는 모노, 스캐닝 축적은 1:1로 하여야 한다.)	도면, 문서부분 데이터 형식
제출 형식 구성 방법	도면용 CD명		DWGCD일련번호(2자리 숫자)로 CD명을 부여
	문서용 CD명		DOCCD일련번호(2자리 숫자)로 CD명을 부여
	도면용 C D명의 폴더명	KOS 또는 TIF	도면별로 폴더를 생성하고 폴더명은 도면명과 일치시킨다.
		제출시 PDF	별표 1의 상세목록별 또는 세부목록별 폴더명을 작성한다.
		제출시	
	문서용 CD명의 폴더명		문서별로 폴더를 생성하고 폴더명은 문서명과 일치시킨다.
	파일명		KOSDIC 데이터형식
			: 일련번호(4자리 숫자).KOS
			TIFF 데이터형식
			: 일련번호(4자리 숫자).TIF
			PDF 데이터형식
			: 도면 또는 문서명.PDF
			도면종류별, 각 종계산서별 제출 파일 구분

<비고>

- PDF 파일수록 형식은 상위/하위 목차를 구분하여 별표3을 참고하여 책갈피 형식으로 목차를 구성하여야 한다.
- KOS 및 TIF 파일수록 형식은 도면 및 문서용 폴더의 루트 디렉토리에는 별표 3 및 별표 4에 의해 공사개요, 시설물개요 등에 관한 정보를 입력한 구성파일(MASTER.XML)과 도면 및 문서 색인에 관한 정보를 입력한 색인파일(도면의 경우 DWGINDEX.XML을 문서의 경우 DOCINDEX.XML로 명기)을 수록하여야 한다.

[별표 3] 설계도서 구성파일 및 색인파일 내용

1. 구성파일(MASTER.XML) 내용

항목	태 그	내 용	예
1	<master></master>	태그 사이에 항목2~27을 입력함.	
2	<type></type>	초기 준공일 경우 "준공도서", 보수보강공사일 경우 "보수도서"로 명시	<type>준공도서</type> 또는 <type>보수도서</type>
3	<version></version>	제작시 사용한 MASTER.XML의 버전	<version>1.0</version>
4	<const_info></const_info>	태그 사이에 항목5~9를 입력함.	
5	<const_nm></const_nm>	공사명	<const_nm>XX건설공사</const_nm>
6	<req_nm></req_nm>	발주자명	<req_nm>OOO</req_nm>
7	<const_ymd_from></const_ymd_from>	공사시작일	<const_ymd_from>20020101</const_ymd_from>
8	<const_ymd_to></const_ymd_to>	공사종료일	<const_ymd_to>20040410</const_ymd_to>
9	<cpl_ymd></cpl_ymd>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cpl_ymd>20040415</cpl_ymd>
10	<faci_info></faci_info>	태그 사이에 항목11~12를 입력함.	
11	<faci_no></faci_no>	시설물번호	<faci_no>XX2004-9999999</faci_no>
12	<faci_nm></faci_nm>	시설물명	<faci_nm>XXX시설물</faci_nm>
13	<cd_info></cd_info>	태그 사이에 항목14~15를 입력함.	
14	<dwg_cd_cnt></dwg_cd_cnt>	도면용 CD 개수	<dwg_cd_cnt>2</dwg_cd_cnt>
15	<doc_cd_cnt></doc_cd_cnt>	문서용 CD 개수	<doc_cd_cnt>3</doc_cd_cnt>
16	<dwg_cd_info></dwg_cd_info>	태그 사이에 항목17~21을 입력함.	
17	<dwg_cd_no></dwg_cd_no>	도면용 CD 일련번호	<dwg_cd_no>01</dwg_cd_no>
18	<dwg_cd_file_cnt></dwg_cd_file_cnt>	해당 CD에 수록된 이미지화일 개수	<dwg_cd_file_cnt>1880</dwg_cd_file_cnt>
19	<dwg_kind_info></dwg_kind_info>	태그 사이에 항목20~21을 입력함.	
20	<dwg_kind_nm></dwg_kind_nm>	서브-디렉토리명(도면종류명)	<dwg_kind_nm>설시설계도면</dwg_kind_nm>
21	<dwg_kind_file_cnt></dwg_kind_file_cnt>	서브-디렉토리에 수록된 이미지 파일의 개수	<dwg_kind_file_cnt>630</dwg_kind_file_cnt>
22	<doc_cd_info></doc_cd_info>	태그 사이에 항목23~27을 입력함.	
23	<doc_cd_no></doc_cd_no>	문서용 CD 일련번호	<doc_cd_no>01</doc_cd_no>
24	<doc_cd_file_cnt></doc_cd_file_cnt>	해당 CD에 수록된 이미지화일 개수	<doc_cd_file_cnt></doc_cd_file_cnt>
25	<doc_kind_info></doc_kind_info>	태그 사이에 항목28~27을 입력함.	
26	<doc_kind_nm></doc_kind_nm>	서브-디렉토리명(문서종류명)	<doc_kind_nm></doc_kind_nm>
27	<doc_kind_file_cnt></doc_kind_file_cnt>	서브-디렉토리에 수록된 이미지 파일의 개수	<doc_kind_file_cnt></doc_kind_file_cnt>

<비고>

- 구성파일의 시작부분에는 반드시 "<?xml version="1.0" encoding="ks_c_5601" ?>"을 입력하며 XML 인코딩을 ks_c_5601(완성형 한글)이 아닌 경우 해당 문자세트를 명시한다.
- 항목 3의 경우 본 규정에 따라 제작하는 경우 반드시 "1.0"을 기재하여야 한다.
- 항목 10~12는 공사에 포함된 모든 1, 2종 시설물에 대해 반복 작성되어야 하며, 시설물 번호는 FMS에서 시설물관리대장 입력 후 자동 부여되는 번호를 말한다.
- 항목 16~27은 각각 해당되는 내용이 다수일 경우 해당되는 만큼 반복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항목 17, 23의 CD 일련번호는 두 자리 정수로 입력하여야한다.

6. 구성파일(MASTER.XML)은 제출되는 모든 도면용 CD 및 문서용 CD의 루트 디렉토리에 수록되어야 한다.

2. 색인파일 (DWGINDEX.XML/DOCINDEX.XML) 내용

항목	태 그	내 용	예
1	<index></index>	태그 사이에 항목2~9를 입력함.	
2	<type></type>	도면은 dwg, 문서는 doc로 입력	<type>doc</type>
3	<version></version>	제작시 사용한 INDEX.XML의 버전	<version>1.0</version>
4	<kind_info></kind_info>	태그 사이에 항목5~9를 입력함.	
5	<kind_nm></kind_nm>	서브-디렉토리명(도면/문서종류명)	<kind_nm>구조계산서</kind_nm>
6	<title_info></title_info>	태그 사이에 항목7~9를 입력함.	
7	<level></level>	해당목차의 레벨을 명시함.	<level>1</level>
8	<title></title>	해당목차의 제목을 명시함.	<title>1. 일반사항</title>
9	<file_from></file_from>	시작이미지파일명을 명시함.	<file_from>0006</file_from>

<비고>

1. 색인파일명은 도면의 경우 DWGINDEX.XML로 문서의 경우 DOCINDEX.XML로 명기한다.
2. 색인파일의 시작부분에는 반드시 “<?xml version=“1.0” encoding=“ks_c_5601” ?>” 을 입력 하여야 하며 XML 인코딩을 ks_c_5601(완성형 한글)이 아닌 경우 해당 문자세트를 명시한다.
3. 항목 3의 경우 본 규정에 따른 제작 시에는 반드시 “1.0”을 기재하여야 한다.
4. 항목 4~9는 CD에 포함된 모든 도면/문서종류에 대해 반복 작성되어야 하며, 6~9는 해당 종류별로 각각의 목차에 대해 해당되는 만큼 반복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5. 항목 7의 레벨은 해당 목차의 레벨을 말하며, 예를 들어 표지, 목차, 1장 등의 경우 레벨을 1로, 1.1, 1.2, 2.1 등의 경우 레벨을 2로, 1.1.1, 1.1.2 등의 경우 레벨을 3으로 하여 해당 도면/문서종류에 명시된 목차와 동일하게 6~9를 반복 작성하여야 한다.
6. 항목 9의 시작이미지파일명은 4자리 정수로 0001로 시작하는 연속된 정수로 입력하여야한다.

3. 구성파일 (MASTER.XML) 작성 예시

```
<?xml version="1.0" encoding="ks_c_5601" ?>

<master>

    <type>준공도서</type>

    <version>1.0</version>

    <const_info>

        <const_nm>XXX건설공사</const_nm>

        <req_nm>OOO</req_nm>

        <const_ymd_from>20020101</const_ymd_from>

        <const_ymd_to>20040410</const_ymd_to>

        <cpl_ymd>20040415</cpl_ymd>

    </const_info>

    <facil_info>

        <facil_no>XX2004-9999991</facil_no>

        <facil_nm>XX1 시설물</facil_nm>

    </facil_info>

    <facil_info>

        <facil_no>XX2004-9999992</facil_no>

        <facil_nm>XX2 시설물</facil_nm>

    </facil_info>

    <facil_info>

        <facil_no>XX2004-9999993</facil_no>

        <facil_nm>XX3 시설물</facil_nm>

    </facil_info>

    <facil_info>

        <facil_no>XX2004-9999994</facil_no>

        <facil_nm>XX4 시설물</facil_nm>

    </facil_info>

    <facil_info>

        <facil_no>XX2004-9999995</facil_no>

        <facil_nm>XX5 시설물</facil_nm>

    </facil_info>

    <facil_info>

        <facil_no>XX2004-9999996</facil_no>
```

```

        <facil_nm>XX6 시설물</facil_nm>
    </facil_info>
    <facil_info>
        <facil_no>XX2004-9999997</facil_no>
        <facil_nm>XX7 시설물</facil_nm>
    </facil_info>
    <facil_info>
        <facil_no>XX2004-9999998</facil_no>
        <facil_nm>XX8 시설물</facil_nm>
    </facil_info>
    <facil_info>
        <facil_no>XX2004-9999999</facil_no>
        <facil_nm>XX9 시설물</facil_nm>
    </facil_info>
    <cd_info>
        <dwg_cd_cnt>2</dwg_cd_cnt>
        <doc_cd_cnt>3</doc_cd_cnt>
    </cd_info>
    <dwg_cd_info>
        <dwg_cd_no>01</dwg_cd_no>
        <dwg_cd_file_cnt>1880</dwg_cd_file_cnt>
        <dwg_kind_info>
            <dwg_kind_nm>실시설계도면</dwg_kind_nm>
            <dwg_kind_cnt>630</dwg_kind_cnt>
        </dwg_kind_info>
        <dwg_kind_info>
            <dwg_kind_nm>설계변경도면</dwg_kind_nm>
            <dwg_kind_cnt>820</dwg_kind_cnt>
        </dwg_kind_info>
        <dwg_kind_info>
            <dwg_kind_nm>준공도면</dwg_kind_nm>
            <dwg_kind_cnt>430</dwg_kind_cnt>
        </dwg_kind_info>
    </dwg_cd_info>

```

```

    <dwg_cd_info>
        <dwg_cd_no>02</dwg_cd_no>
        <dwg_cd_file_cnt>1760</dwg_cd_file_cnt>
        <dwg_kind_info>
            <dwg_kind_nm>준공도면</dwg_kind_nm>
            <dwg_kind_cnt>1760</dwg_kind_cnt>
        </dwg_kind_info>
    </dwg_cd_info>
    <doc_cd_info>
        <doc_cd_no>01</doc_cd_no>
        <doc_cd_file_cnt>3880</doc_cd_file_cnt>
        <doc_kind_info>
            <doc_kind_nm>시방서</doc_kind_nm>
            <doc_kind_cnt>3880</doc_kind_cnt>
        </doc_kind_info>
    </doc_cd_info>
    <doc_cd_info>
        <doc_cd_no>02</doc_cd_no>
        <doc_cd_file_cnt>1880</doc_cd_file_cnt>
        <doc_kind_info>
            <doc_kind_nm>구조 계산서</doc_kind_nm>
            <doc_kind_cnt>1360</doc_kind_cnt>
        </doc_kind_info>
        <doc_kind_info>
            <doc_kind_nm>지질검토계산서</doc_kind_nm>
            <doc_kind_cnt>520</doc_kind_cnt>
        </doc_kind_info>
    </doc_cd_info>
    <doc_cd_info>
        <doc_cd_no>03</doc_cd_no>
        <doc_cd_file_cnt>4280</doc_cd_file_cnt>
        <doc_kind_info>
            <doc_kind_nm>준공내역서</doc_kind_nm>
            <doc_kind_cnt>3320</doc_kind_cnt>
        </doc_kind_info>
    </doc_cd_info>

```

```

</doc_kind_info>

<doc_kind_info>

    <doc_kind_nm>특기서방서</doc_kind_nm>

    <doc_kind_cnt>960</doc_kind_cnt>

</doc_kind_info>

</doc_cd_info>

</master>

```

4. 문서 색인파일 (DOCINDEX.XML) 작성 예시

```

<?xml version="1.0" encoding="ks_c_5601" ?>
<index>
    <type>doc</type>
    <version>1.0</version>
    <kind_info>
        <kind_nm>구조 계산서</kind_nm>
        <title_info>
            <level>1</level>
            <title>표지</title>
            <file_from>0001</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1</level>
            <title>목차</title>
            <file_from>0003</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1</level>
            <title>1. 일반사항</title>
            <file_from>0006</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2</level>
            <title>1.1 구조개요</title>
            <file_from>0008</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1</level>
            <title>2. 내진 설계 점검표</title>
            <file_from>0022</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1</level>
            <title>3. 내진 구조 설계 점검표</title>
            <file_from>0038</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1</level>
            <title>4. 내진 구조 설계 검토서</title>
            <file_from>0102</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1</level>
            <title>5. 평면 골조 계획</title>
            <file_from>0203</file_from>
        </title_info>
    </kind_info>

```

```

        <level>2</level>
        <title>5.1 구조 평면도</title>
        <file_from>0212</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2</level>
        <title>5.2 단위세대 구조 평면도</title>
        <file_from>0298</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1</level>
        <title>6. 설계 하중</title>
        <file_from>0353</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2</level>
        <title>6.1 지진하중</title>
        <file_from>0412</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2</level>
        <title>6.2 풍하중</title>
        <file_from>0495</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1</level>
        <title>7. 슬라브 설계</title>
        <file_from>0545</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2</level>
        <title>7.1 Safe 모델링,입력자료</title>
        <file_from>0634</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2</level>
        <title>7.2 슬라브 배근도</title>
        <file_from>0726</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1</level>
        <title>8. 구조물 해석</title>
        <file_from>0791</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2</level>
        <title>8.1 하중 산정</title>
        <file_from>0829</file_from>
    </title_info>

```

```

    <title_info>
        <level>2</level>
        <title>8.2 ETABS 모델링, 입력자료</title>
        <file_from>1032</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1</level>
        <title>9. 내력벽,전단벽 설계</title>
        <file_from>1123</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2</level>
        <title>9.1 벽체에 작용하는 축력,모멘트 전단력</title>
        <file_from>1221</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2</level>
        <title>9.2 벽체 배근도</title>
        <file_from>1324</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1</level>
        <title>10. 보 설계</title>
        <file_from>1452</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2</level>
        <title>10.1 보에 작용하는 모멘트,전단력</title>
        <file_from>1498</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2</level>
        <title>10.2 보 배근도</title>
        <file_from>1534</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1</level>
        <title>11. 기둥 설계</title>
        <file_from>1617</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2</level>
        <title>11.1 기둥에 작용하는 축력,모멘트</title>
        <file_from>1632</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2</level>
        <title>11.2 기둥 설계</title>
        <file_from>1772</file_from>
    </title_info>

```

```

</title_info>
<title_info>
  <level>2</level>
  <title>11.3 기동 배근도</title>
  <file_from>1892</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1</level>
  <title>12. 기초 설계</title>
  <file_from>2003</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2</level>
  <title>12.1 기초에 작용하는 축력,모멘트 정리</title>
  <file_from>2122</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2</level>
  <title>12.2 파일 기초 및 배근도</title>
  <file_from>2432</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2</level>
  <title>12.3 매트기초 및 배근도</title>
  <file_from>2631</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1</level>
  <title>13. 잡배근 설계</title>
  <file_from>2728</file_from>
</title_info>
</kind_info>
</index>

```

[별표 4] 감리보고서 구성파일 및 색인파일 내용

1. 구성파일(MASTER.XML) 내용

항목	태 그	내 용	예
1	<master></master>	태그 사이에 항목2~27을 입력함.	
2	<type></type>	감리보고서의 경우 “감리보고서”로 명시	<type>설계도서</type>
3	<version></version>	제작시 사용한 MASTER.XML의 버전	<version>1.0</version>
4	<const_info></const_info>	태그 사이에 항목5~9를 입력함.	
5	<const_nm></const_nm>	공사명	<const_nm>XXX건설공사</const_nm>
6	<req_nm></req_nm>	발주자명	<req_nm>OOO</req_nm>
7	<const_ymd_from></const_ymd_from>	공사시작일	<const_ymd_from>20020101</const_ymd_from>
8	<const_ymd_to></const_ymd_to>	공사종료일	<const_ymd_to>20040410</const_ymd_to>
9	<cpl_ymd></cpl_ymd>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cpl_ymd>20040415</cpl_ymd>
10	<faci_info></faci_info>	태그 사이에 항목11~12를 입력함.	
11	<faci_no></faci_no>	시설물번호	<faci_no>XX2004-9999999</faci_no>
12	<faci_nm></faci_nm>	시설물명	<faci_nm>XXX시설물</faci_nm>
13	<cd_info></cd_info>	태그 사이에 항목14~15를 입력함.	
14	<dwg_cd_cnt></dwg_cd_cnt>	도면용 CD 개수(해당없을 경우 0으로 입력)	<dwg_cd_cnt>2</dwg_cd_cnt>
15	<doc_cd_cnt></doc_cd_cnt>	문서용 CD 개수	<doc_cd_cnt>3</doc_cd_cnt>
16	<dwg_cd_info></dwg_cd_info>	태그 사이에 항목17~21을 입력함.	
17	<dwg_cd_no></dwg_cd_no>	도면용 CD 일련번호	<dwg_cd_no>01</dwg_cd_no>
18	<dwg_cd_file_cnt></dwg_cd_file_cnt>	해당 CD에 수록된 이미지화일 개수	<dwg_cd_file_cnt>1880</dwg_cd_file_cnt>
19	<dwg_kind_info></dwg_kind_info>	태그 사이에 항목20~21을 입력함.	
20	<dwg_kind_nm></dwg_kind_nm>	서브-디렉토리명(도면종류명)	<dwg_kind_nm>실시설계도면</dwg_kind_nm>
21	<dwg_kind_file_cnt></dwg_kind_file_cnt>	서브-디렉토리에 수록된 이미지 파일의 개수	<dwg_kind_file_cnt>630</dwg_kind_file_cnt>
22	<doc_cd_info></doc_cd_info>	태그 사이에 항목23~27을 입력함.	
23	<doc_cd_no></doc_cd_no>	문서용 CD 일련번호	<doc_cd_no>01</doc_cd_no>
24	<doc_cd_file_cnt></doc_cd_file_cnt>	해당 CD에 수록된 이미지화일 개수	<doc_cd_file_cnt></doc_cd_file_cnt>
25	<doc_kind_info></doc_kind_info>	태그 사이에 항목26~27을 입력함.	
26	<doc_kind_nm></doc_kind_nm>	서브-디렉토리명(문서종류명)	<doc_kind_nm></doc_kind_nm>
27	<doc_kind_file_cnt></doc_kind_file_cnt>	서브-디렉토리에 수록된 이미지 파일의 개수	<doc_kind_file_cnt></doc_kind_file_cnt>

<비고>

- 별표3의 3.구성파일 작성예시를 참조하되, 위의 세부내용을 만족하도록 한다.
- 감리보고서와 관련한 도면이 본 보고서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반드시 도면과 문서를 분리하여 사본을 제작하여야 하며, 관련 도면이 없는 경우 항목 14는 0으로, 항목 16~21은 공란으로 둔다. 단, 본 보고서 내에 삽입된 도면의 경우는 문서로

본다.

3. 구성파일의 시작부분에는 반드시 “<?xml version=“1.0” encoding=“*ks_c_5601*” ?>”을 입력 하여야 하며 XML 인코딩을 *ks_c_5601*(완성형 한글)이 아닌 경우 해당 문자세트를 명시한다.
4. 항목 3의 경우 본 규정에 따른 제작 시에는 반드시 “1.0”을 기재하여야 한다.
5. 항목 10~12는 공사에 포함된 모든 1, 2종 시설물에 대해 반복 작성되어야 하며, 시설물 번호는 FMS에서 관리대장입력 후 자동 부여되는 번호를 말한다.
6. 항목 16~27은 각각 해당되는 내용이 다수일 경우 해당되는 만큼 반복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7. 항목 17, 23의 CD 일련번호는 두 자리 정수로 입력하여야한다.
8. 구성파일(MASTER.XML)은 제출되는 모든 도면용 CD 및 문서용 CD의 루트 디렉토리에 수록되어야 한다.

2. 색인파일 (INDEX.XML/DOCINDEX.XML) 내용

항목	태 그	내 용	예
1	<index></index>	태그 사이에 항목2~9를 입력함.	
2	<type></type>	도면은 dwg, 문서는 doc로 입력	<type>doc</type>
3	<version></version>	제작시 사용한 INDEX.XML의 버전	<version>1.0</version>
4	<kind_info></kind_info>	태그 사이에 항목5~9를 입력함.	
5	<kind_nm></kind_nm>	서브-디렉토리명(도면/문서종류명)	<kind_nm>구조개산서</kind_nm>
6	<title_info></title_info>	태그 사이에 항목7~9를 입력함.	
7	<level></level>	해당목차의 레벨을 명시함.	<level>1</level>
8	<title></title>	해당목차의 제목을 명시함.	<title>1. 일반사항</title>
9	<file_from></file_from>	시작이미지파일명을 명시함.	<file_from>0006</file_from>

<비 고>

1. 색인파일명은 도면의 경우 DWGINDEX.XML로 문서의 경우 DOCINDEX.XML로 명기한다.
2. 별표3의 4.색인파일 작성예시를 참조하되, 위의 세부내용을 만족하도록 한다.
3. 색인파일의 시작부분에는 반드시 “<?xml version=“1.0” encoding=“*ks_c_5601*” ?>” 을 입력 하여야 하며 XML 인코딩을 *ks_c_5601* I(완성형 한글)이 아닌 경우 해당 문자세트를 명시한다.
4. 항목 3의 경우 본 규정에 따른 제작 시에는 반드시 “1.0”을 기재하여야 한다.
5. 항목 4~9는 CD에 포함된 모든 도면/문서종류에 대해 반복 작성되어야 하며, 6~9는 해당 종류별로 각각의 목차에 대해 해당되는 만큼 반복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6. 항목 7의 레벨은 해당 목차의 레벨을 말하며, 예를 들어 표지, 목차, 1장 등의 경우 레벨을 1로, 1.1, 1.2, 2.1 등의 경우 레벨을 2로, 1.1.1, 1.1.2 등의 경우 레벨을 3으로 하여 해당 도면/문서종류에 명시된 목차와 동일하게 6~9를 반복 작성하여야 한다.
7. 항목 9의 시작이미지파일명은 4자리 정수로 0001로 시작하는 연속된 정수로 입력하여야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11조 관련)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 현황

□ 제출기관별 현황

소관기관	제출기관명	대상시설물	20 년도		
			제 출	미 제 출	제출비율(%)
계					

[자료 추출일 : . .]

□ 취합기관별 현황

제출기관	취합기관명	대상시설물	20 년도		
			제 출	미 제 출	제출비율(%)
계					

[자료 추출일 : . . .]

[별지 제2호 서식] (제15조 관련)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 현황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분야별 현황

구분	계	등록분야														
		교량 및 터널 ①	건축 ②	항만 ③	수리 ④	종합 ① ② ③ ④	① ②	①③	①④	②③	②④	③④	①② ③	①② ④	①③ ④	②③ ④
전년도																
보고분기 내역																
당해년도 누계																
증 감																

[자료 추출일 : . . .]

□ 시도별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현황

시도	계	등록분야														
		교량 및 터널 ①	건축 ②	항만 ③	수리 ④	종합 ① ② ③ ④	① ②	① ③	① ④	② ③	② ④	③ ④	① ② ③	① ② ④	① ③ ④	② ③ ④
합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 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 자치도																

[자료 추출일 : . . .]

□ 유지관리업자 등록 현황

구분	전년도	보고분기 내역	당해연도 누계	증감
계				

[자료 추출일 : . . .]

□ 시도별 유지관리업자 등록 현황

구분	합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계																		

[자료 추출일 : . . .]

□ 시도별 행정처분 현황

시도별	계	시정명령		경고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태료부과	
		진단 기관	유지 업자	진단 기관	유지 업자	진단 기관	유지 업자	진단 기관	유지 업자	진단 기관	유지 업자
합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 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 자치도											

[자료 추출일 : . . .]

[별지 제3호 서식] (제24조제2항 관련)

안전진단전문기관 행정처분 현황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업체구분						
사용용도		제출처				
행정처분 현황	연번	처분일자	처분구분	분야	처분내용	처분사유

※ 위 현황은 안전진단 전문기관 관리기관이 FMS에 입력한 현황임.

년 월 일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인]

- 57 -

[자료 추출일 : . . .]

- 58 -

[자료 추출일 : . . .]

No. 1

- 59 -

- 60 -

구 분	중 별	등 급	계	교량	터널	항만	댐	지하	공	건축물										하천	상하수도	옹벽	철도사면	시
				도로	도로	도로	도로	도로	도로	중소형건축물										수	배	옹벽	옹벽	시
				교량	교량	교량	교량	교량	교량	교량	교량	교량	교량	교량	교량	교량	교량	교량	교량	교량	교량	교량	교량	교량
중앙 행정 기관	1 종	A																						
		B																						
		C																						
		D																						
		E																						
		불명 소계																						
	2 종	A																						
		B																						
		C																						
		D																						
		E																						
		불명 소계																						
	3 종	A																						
		B																						
		C																						
		D																						
		E																						
		불명 소계																						

- 61 -

구 분	중 별	등 급	계	교량	터널	항만	댐	지하	공	건축물										하천	상하수도	옹벽	철도사면	시
				도로	도로	도로	도로	도로	도로	중소형건축물										수	배	옹벽	옹벽	시
				교량	교량	교량	교량	교량	교량	교량	교량	교량	교량	교량	교량	교량	교량	교량	교량	교량	교량	교량	교량	교량
정 부 산 하 단 체	1 종	A																						
		B																						
		C																						
		D																						
		E																						
		불명 소계																						
	2 종	A																						
		B																						
		C																						
		D																						
		E																						
		불명 소계																						
	3 종	A																						
		B																						
		C																						
		D																						
		E																						
		불명 소계																						

- 62 -

구 분	종 별	등 급	계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하천		상하수도		옹벽		철도사면		시설 물 기 타																																																																																																																																																																																																																																																																																																																																																																																																																																																																																																																																																																																																																																																																																																																																																																																																																																																																																																																																																																																																																																																																																																																																																																																																																																																																																							
				도로교	개교량	철도교량	도로차터널	지하차터널	철도차터널	감문시설	방파제	계류시설	다목적댐	홍수전용댐	지하수전용댐	지방상수도전용댐	공동주택연립주택	대형건축물	공업건축물	중소형건축물								철도건축물	하천도상가	하천도상기타	수문	제방	배수펌프장		광역상수도	지역상수도	공용상하수처리시설	도로용벽	철도용벽	건축로사면	철도사면	건축로사면	철도사면																																																																																																																																																																																																																																																																																																																																																																																																																																																																																																																																																																																																																																																																																																																																																																																																																																																																																																																																																																																																																																																																																																																																																																																																																																																																														

[자료 추출일 : . . .]

분기별 성능평가 대상시설물 등급별 현황

No. 1

구 분	종 별	등 급	계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공용) 대형 건축물	하천			상하 수도	옹벽		철도사면	
				도로교량	철도교량	도로터널	철도터널	계류시설	다목적댐		하구둑	수문	제방	광역상수도	도로옹벽	철도옹벽	도로사면	철도사면
전 체 (1 종)	종합 성 능	A																
		B																
		C																
		D																
		E																
		불명 소계																
	안 전 성 능	A																
		B																
		C																
		D																
		E																
		불명 소계																
	내 구 성 능	A																
		B																
		C																
		D																
		E																
		불명 소계																
	사 용 성 능	A																
		B																
		C																
		D																
		E																
		불명 소계																

구 분	종 별	등 급	계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공용) 대형건축물	하천			상하 수도	옹벽		절토사면	
				도로교량	철도교량	도로터널	철도터널	계류시설	다목적댐		하구둑	수문	제방		광역상수도	도로옹벽	철도옹벽	도로사면
전 체 (2 종)	종합 성 능	A																
		B																
		C																
		D																
		E																
		불명 소개																
	안 전 성 능	A																
		B																
		C																
		D																
		E																
		불명 소개																
	내 구 성 능	A																
		B																
		C																
		D																
		E																
		불명 소개																
	사 용 성 능	A																
		B																
		C																
		D																
		E																
		불명 소개																

구 분	종 별	등 급	계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공용)	하천			상하 수도	옹벽		철도사면	
				도로교량	철도교량	도로터널	철도터널	계류시설	다목적 댐	대형건축물	하구둑	수문	제방	광역상수도	도로옹벽	철도옹벽	도로사면	철도사면
국 토 부 소 관 (1 종)	종합 성 능	A																
		B																
		C																
		D																
		E																
		불명 소개																
	안 전 성 능	A																
		B																
		C																
		D																
		E																
		불명 소개																
	내 구 성 능	A																
		B																
		C																
		D																
		E																
		불명 소개																
	사 용 성 능	A																
		B																
		C																
		D																
		E																
		불명 소개																

구 분	종 별	등 급	계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공용) 대형건축물	하천			상하 수도	옹벽		철도사면	
				도로교량	철도교량	도로터널	철도터널	계류시설	다목적댐		하구둑	수문	제방		광역상수도	도로옹벽	철도옹벽	도로사면
국 토 부 소 관 (2 종)	총 합 성 능	A																
		B																
		C																
		D																
		E																
		불명 소계																
	안 전 성 능	A																
		B																
		C																
		D																
		E																
		불명 소계																
	내 구 성 능	A																
		B																
		C																
		D																
		E																
		불명 소계																
	사 용 성 능	A																
		B																
		C																
		D																
		E																
		불명 소계																

구 분	종 별	등 급	계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공용)	하천			상하 수도	옹벽		철도사면	
				도로교량	철도교량	도로터널	철도터널	계류시설	다목적 댐	대형건축물	하구둑	수문	제방	광역상수도	도로옹벽	철도옹벽	도로사면	철도사면
중앙행정기관 (1종)	종합 성 능	A																
		B																
		C																
		D																
		E																
		불명 소계																
	안전 성 능	A																
		B																
		C																
		D																
		E																
		불명 소계																
	내구 성 능	A																
		B																
		C																
		D																
		E																
		불명 소계																
	사용 성 능	A																
		B																
		C																
		D																
		E																
		불명 소계																

구 분	종 별	등 급	계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공용) 대형건축물	하천			상하 수도	옹벽		절토사면	
				도로교량	철도교량	도로터널	철도터널	계류시설	다목적댐		하구둑	수문	제방		광역상수도	도로옹벽	철도옹벽	도로사면
중앙 행정 기관 (2 종)	종합 성 능	A																
		B																
		C																
		D																
		E																
		불명 소계																
	안 전 성 능	A																
		B																
		C																
		D																
		E																
		불명 소계																
	내 구 성 능	A																
		B																
		C																
		D																
		E																
		불명 소계																
	사 용 성 능	A																
		B																
		C																
		D																
		E																
		불명 소계																

구 분	종 별	등 급	계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공용)	하천			상하 수도	옹벽		철토사면	
				도로교량	철도교량	도로터널	철도터널	계류시설	다목적댐	대형건축물	하구둑	수문	제방	광역상수도	도로옹벽	철도옹벽	도로사면	철도사면
정 부 사 하 단 체 (1 종)	종합 성 능	A																
		B																
		C																
		D																
		E																
		불명 소계																
	안 전 성 능	A																
		B																
		C																
		D																
		E																
		불명 소계																
	내 구 성 능	A																
		B																
		C																
		D																
		E																
		불명 소계																
	사 용 성 능	A																
		B																
		C																
		D																
		E																
		불명 소계																

구 분	종 별	등 급	계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공용) 대형건축물	하천			상하 수도	옹벽		절토사면	
				도로교량	철도교량	도로터널	철도터널	계류시설	다목적댐		하구둑	수문	제방	광역상수도	도로옹벽	철도옹벽	도로사면	철도사면
정 부 사 하 단 체 (2 종)	총 합 성 능	A																
		B																
		C																
		D																
		E																
		불명 소계																
	안 전 성 능	A																
		B																
		C																
		D																
		E																
		불명 소계																
	내 구 성 능	A																
		B																
		C																
		D																
		E																
		불명 소계																
	사 용 성 능	A																
		B																
		C																
		D																
		E																
		불명 소계																

구 분	종 별	등 급	계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공용) 대형건축물	하천			상하 수도	옹벽		절토사면	
				도로교량	철도교량	도로터널	철도터널	계류시설	다목적댐		하구둑	수문	제방	광역상수도	도로옹벽	철도옹벽	도로사면	철도사면
지 방 자 치 단 체 (1 종)	총 합 성 능	A																
		B																
		C																
		D																
		E																
		불명 소계																
	안 전 성 능	A																
		B																
		C																
		D																
		E																
		불명 소계																
	내 구 성 능	A																
		B																
		C																
		D																
		E																
		불명 소계																
	사 용 성 능	A																
		B																
		C																
		D																
		E																
		불명 소계																

구 분	종 별	등 급	계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하천			상하 수도	옹벽		철도사면	
				도로교량	철도교량	도로터널	철도터널	계류시설	다목적댐	(공용) 대형건축물	하구둑	수문	제방	광역상수도	도로옹벽	철도옹벽	도로사면	철도사면
지 방 자 치 단 체 (2 종)	총 합 성 능	A																
		B																
		C																
		D																
		E																
		불명 소계																
	안 전 성 능	A																
		B																
		C																
		D																
		E																
		불명 소계																
	내 구 성 능	A																
		B																
		C																
		D																
		E																
		불명 소계																
	사 용 성 능	A																
		B																
		C																
		D																
		E																
		불명 소계																

[자료 추출일 : . . .]

[별지 제5호 서식]
(제25조제2항 관련)

분기별 안전취약시설물 현황

번호	시설물명	관리주체	위험기관	제출기관	시설물 구분	시설물 종류	종 별	주소	준공일	진단일	등급	주요점검결과	보수보강 (안)

[자료 추출일 : . . .]

분기별 안전취약시설물 조치현황

번호	시설물명	관리주체	위험기관	제출기관	등급	조치현황					
						보수보강 진행 중	철거 진행 중	일부 사용제한	전면 사용금지	기타	보수보강 완료

[자료 추출일 : . . .]

분기별 중대결함 조치현황

기준일	구 분	중대결함 현황							비고
		시설물 수	중대 결함수	조치 미이행			착수·조치완료 기한미도래	조치완료	
				소개	미착수	미완료			
전체누계	전 체								
	공 공								
	민 간								

[자료 추출일 : . . .]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제출 현황

No. 1

소관 기관	제출기관명	대상시설물	전년도 정기안전점검			전년도 정밀안전점검			전년도 정밀안전진단			전년도 성능평가		
			대상	실시	비율(%)	대상	실시	비율(%)	대상	실시	비율(%)	대상	실시	비율(%)
국토부 소관														
중앙 행정 기관														
정부 산하 단체														
지방 자치 단체														
합 계														

[자료 추출일 : . . .]

[별지 제8호 서식] (제34조제7항 관련)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제출 사실 확인서

1. 시설물관리대장

시설물명	공사명	시설물 번호	시설물 종류	종별	주소	제출자 (관리주체명)	접수 완료일

2.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공 사 명					제출목록	대상시설물
☐ 대상	제출자 (시공자)		접 수 완료일		☐ 준공도면 ☐ 준공내역서 ☐ 시방서 ☐ 구조계산서 ☐ 기타()	
☐ 비대상	비대상 사 유					

주) 공사명이 2개 이상인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건별로 구분하여 확인 가능.

※ 본 제출 사실 확인서는 관리주체 또는 시공자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를 통해 제출한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의 제출 사실만을 확인함.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의 제출 사실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인)

[별지 제9호 서식] (제43조제1항 관련)

설계도서의 관리 현황

☐ 설계도서 접수 현황

기준일	구분	설계도서 현황			
		제출대상	보존 및 관리	미보존	
				전체미보존	부분보존
전체 누계	계				
	공공				
	민간				
해당분기 현황 (20 년 ○/4분기)	계				
	공공				
	민간				
보고년도 누계	계				
	공공				
	민간				

[자료 추출일 : . .]

안전점검종합보고서 관리 현황

□ 안전점검종합보고서 접수 현황

기준일	구 분	전 체	제 출	미제출
전체 누계	합 계			
	공 공			
	민 간			
해당분기 현황 (20 년 ○/4분기)	계			
	공 공			
	민 간			
보고년도 누계	계			
	공 공			
	민 간			

[자료 추출일 : . . .]

□ 안전점검종합보고서 사전예고 및 제출촉구 현황

분 기		사전예고		제출촉구	
		시공사수	시설물수	시공사수	시설물수
○/4 분기	△월				
	△월				
	△월				
계					
보고년도 누계					

[자료 추출일 : . . .]

<붙임> 보고년도 안전점검종합보고서 미제출 현황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표준연계서비스 이용 신청서			
기관코드		신청인 (기관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이용목적		이용기관	
적용 시스템 세부 사항	시스템명	개발언어	
	서버IP	홈페이지(URL)	
	서버사양	운영체제	
	웹서버	WAS서버	
업무 담당	부서명	직위명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	이메일	
시스템 담당	소속회사	직위명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	이메일	
서비스 희망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52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표준연계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 서명 또는 인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